응급실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

2022. 7.

사단법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응급실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건의 요약

1) 경과

○ **(응급실 상해·방화사건 발생)**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상해사건(2022.6.15.) 및 부산 소재 상급종합병원 방화사건(2022.6.24.) 등 **응급실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**

- 이에, 응급의료현장 **폭행·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**을 위한 **「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」**를 **개최**

※ 국회의원 김민석·김원이·신현영(더불어민주당)·백종헌(국민의힘), 병원협회 공동주최(2022.7.11.)

2) 응급실 등 폭행 현황 및 필요성

○ **(의료기관 폭력 범죄건수 증가)** '18년부터 의료기관 폭력 범죄건수 증가('18년 2,524건, '20년 2,194건), 특히 경찰에 접수된 **응급실 범죄 10년새 11.7.배 증가**('09년 42건, 2018년 490건)

- **(발생원인)** 음주상태, 진료결과불만, 대기시간·진료순서 불만 등 다양, **주취자 폭력이 51.3%로 주 원인으로 작용**
- **(사건유형)** 일반상해, 진료방해, 폭언, 협박 등 다양
- **(후속조치)**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비율이 높고,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는 소극적인 상황

※ 출처: 「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」(2022.7.11.)

○ **(대책 마련 필요성)**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환자·보호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, 피해자(의료기관 종사자)의 공백 및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등으로 진료 기능이 마비가 (응급)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이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

3) 건의사항

① 법·제도 개선

○ **(반의사불벌 규정 삭제)** 「의료법」 제87조의2 개정

○ **(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)** 「응급의료법」 제64조 개정

○ **(가중처벌 적용)** 「특정범죄가중처벌법」 개정·조항 신설

○ **(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·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)** 「의료법」 제12조 및 「응급의료법」 제12조 개정·조항 신설

○ **(응급의료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 위한 법적근거 마련)** 「의료법」 제12조 및 「응급의료법」 제5조의2 및 제12조 개정

○ **(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)** 「응급의료법」 제31조의5 개정

* 응급환자가 주취자이면서 폭력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(경증환자에 한함) 제한

* 필요시 의료법 상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와 같이 보건복지부 해석 마련 등

② 재정적·행정적 지원

○ **(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)**

-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

* 별도 응급실/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(국가·지자체 지원 등)

-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적극 도입

- 치료비용 대지급 제도 도입

○ **(경찰 대응 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)**

- 신고접수시 신속출동을 통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하는 등 수사단계부터 중한 죄질로 다루어 구속수사 및 무관용원칙 적용

- 경찰 순찰선에 관할 응급실을 추가하며,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보복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
- 범부처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정책보완사항 등을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·추진

③ 사회적 인식 개선

○ **(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)**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용 및 충분한 진료정보 제공, 이용자 친화적 응급실 환경 조성 및 이용 문화 개선

○ **(신뢰 배려 문화 조성 및 홍보강화)** 관련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 방송매체 지속 홍보, 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분석과 표준모델 제시

세부 건의내용

1 법·제도 개선

①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

○ **(현황)**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' 조항으로 인하여 합의종용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

○ **(개선안)** **「의료법」 제87조의2(벌칙) 개정**하여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

②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

○ **(현황)**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·폭력사건은 피해자인 의료진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및 환자·보호자의 불안감 조성, (응급)의료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임

○ **(개선안)** **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64조(「형법」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) 개정**을 통해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

③ 가중처벌 적용

○ **(현황)**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등에 대한 폭력·폭행의 경우, '반의사불벌죄' 적용 대상은 아니며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0에 따른 '가중처벌'의 대상임

- 특히, 의료인은 근무장소가 고정적이고 근무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보복,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저해의 가능성이 높아 법적보호가 필요함

○ **(개선안)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조항 신설**하여 「의료법」 및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상 폭력 사건을 가중처벌

④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·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

○ **(현황)**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·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**처벌 받지 않은 비율**이 매우 높고*, **가해자의 보복우려**와 경찰서 출두 등 수사기관 출석 등 후속절차로 인한 **시간·행정적 소요 등**으로 **신고는 소극적인 상황**

* **폭행사건 처벌 여부: [병원]** ▲처벌28.6%, ▲미처벌71.4% / **[의원]** ▲처벌13.5%, ▲미처벌86.5%. 안전한 응급실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, 김원. 2022.7.11.

○ **(개선안) 「의료법」 및 「응급의료법」 개정·조항 신설**을 통해 폭행·폭력 가해자의 보복우려를 감소시켜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 도모

⑤ 응급의료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

○ **(현황)*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상 '응급의료종사자'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뜻하고, 응급의료방해 금지 대상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외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만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안인력은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

○ **(개선안) 「의료법」 및 「응급의료법」 개정·조항 신설**을 통해 (응급)의료방해 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를 포함(보안요원, 행정직원 등)하고, 특히 응급실내 폭력·폭행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민·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(쌍방폭행 미적용)

⑥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

○ **(현황)** 「응급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4(응급실 출입제한)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는, "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나, 술 취한 사람,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"은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나, 환자의 경우 해당 규정 부재

○ **(개선안)** 「응급의료법」 제31조의5(응급실 출입 제한) 개정을 통해, 응급환자가 주취자이면서 폭력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(경증환자에 한함)에는 출입을 제한하여 **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제공 거부권을 인정**

* 필요시 「의료법」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같이 보건복지부 해석 마련

2 재정적 · 행정적 지원

①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

○ **(현황)**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력예방 등은 의료기관의 자체적 노력·의지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,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·지자체 등 지원 필요. 응급환자 중 주취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관 부족한 상황(8개 시도 16개소, 2021.8월 기준)

○ **(개선안)**

- **(사전 예방적 측면)** 의료기관에 전문적인 보안인력의 상시 배치가 중요하므로 **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**

· 별도의 **응급실/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**(국가·지자체 지원 등)을 통해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**충분한 비용 보전** 필요

* 참고로, (입원)환자안전관리료와 응급의료관리료에 보안인력 및 시설, 장비

관련 지원부분이 일정부분 고려가 되어있다고하나, 보안인력 고용 등을 통한 응급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유지에 어려움

· **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적극 도입**

- **(사후 대응적 측면)** 폭행·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당사자 청구가 있을 때, **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**한 후 대지급자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도입

2 경찰 대응 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

○ **(현황)** 응급의료진은 대부분 근무장소가 고정적이라 가해자 조기석방으로 인한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므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필요

○ **(개선안)**

-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·폭력 사건 신고접수시 **신속출동을 통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하는 등 수사단계부터 중한 죄질로 다루어 구속수사 및 무관용원칙 적용**

· 필요시, 경찰청 및 법무부 내 관련 내용이 포함된 '응급의료 폭력행위 대응지침' 마련·시행

* 참고. 수사단계의 구속수사의 일반적 사유

①주거부정, ②도주우려, ③증거인멸우려, ④죄질

- 또한, **△경찰 순찰선에 관할 응급실을 추가**하며, **△피해자에 스마트워치* 제공** 등 피해자 보복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

* (스마트워치)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과 연결되어 있어 호출시 즉시 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가능

- 아울러, **범부처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**하여 정책보완 사항 등을 발굴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 추진 필요

3 사회적 인식 개선

1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

○ **(현황)** 긴 대기시간 및 응급실 이용·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, 응급의료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 폭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, 왜곡된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필요

○ **(개선안)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를 배치**하여 환자·보호자에게 충분한 이용 및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**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**

*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배치를 위한 인건비 등은 2-1)과 같이 적정 수가마련 또는 국가·지자체에서 지원 필요

2 신뢰 배려 문화 조성 및 홍보 강화

○ **(현황)** 긴 대기시간 및 응급실 이용·진료 등에 대한 왜곡된 이용 문화 개선이 필요하고, 의료진과 환자간 신뢰 배려 문화 구축 필요

○ **(개선안) 관련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 방송매체 지속홍보**로 응급실 특성에 대한 인식 개선, **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분석과 표준모델 제시**